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30일 17시 4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	3

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

2014.04.17 조회수 646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3
담당부서	하수도과
상위법령	하수도법 제61조 제2항
조례	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
유형	4호 - 기타(부담금징수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1998-04-04
규제시행/폐지일	1998-04-04
규제내용	제22조(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타공사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4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1-0054

Yeosu Web Contents

